

# 육아정책 Brief

육아정책연구소

2023.12.28

통권 제98호

발행인 | 박상희 발행처 | 육아정책연구소

## 영아 유기 예방을 위한 법령시행, 그리고 남은 과제<sup>1)</sup>

### I 영아 유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이루어진 제도의 변화

영아학대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성으로 인해 영아 유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됨.

- ▶ 유기되는 영아의 수<sup>2)</sup>는 2017~2021년 기간에 매년 100명 이상의 아동이 유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후 1개월 미만의 신생아가 다수를 이루고 있음.
- ▶ 보건복지부가 출생신고가 확인되지 않은 채 임시신생아번호<sup>3)</sup>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2015~2022년)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 확인완료(1,028명), 원가정 및 친인척 양육/입양(771명), 사망(249명), 경찰수사 의뢰(1,095명<sup>4)</sup>)로 확인되었음.
- ▶ 의료기관에서 출생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확인되면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출생통보제<sup>5)</sup>' 도입을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정부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sup>6)</sup>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해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sup>7)</sup>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출생신고와 소재안전을 확인 할 방침임.

2023년 한 해, 영아 학대 및 유기 심각성을 해소하고자 우리나라의 영아 유기 예방과 관련된 제도는 큰 변화를 맞이하였음.

위기임산부와 태아 혹은 출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2024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영아 살해죄와 영아유기죄가 2023년 폐지되었음.

1)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기본과제인 「영아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개선 방안: 영아 유기를 중심으로(김자연·박은정·최윤경·차선자·윤수경, 2023)」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음.

2) 보호대상 아동 현황 보고통계(동계청·보건복지부)에 따름.

3) 임시신생아번호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통합시스템'에 신생아의 출생일·성별·출생병원·보호자 인적사항이 기록되는 번호를 말함. 이후 보호자가 출생 신고를 할 경우 '임시 신생아 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됨.

4) 경찰 수사 의뢰 1,095명 중 유기 601명(54.9%),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21.2%) 등으로 확인이 되어 출생신고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중 유기 비중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경찰이 수사 의뢰를 받은 사건을 조사하던 중, 2023년 6월 21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를 압수수색하여 가정집 냉장고에서 친모가 출산 후 살해한 영아 시신 2구를 발견하기도 함.

5)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에 통보하는 제도로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부모 등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 기간인 1개월 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부모 등에게 7일 내에 이를 이행할 것을 최고(催告: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말함)함.

6)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은 예방 접종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접종 대상자의 개인정보, 접종 이력, 접종 일정 등의 정보가 관리되고 있음.

7)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는 현행법상 출생신고가 안 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생아나 아동들에게 긴급하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지원해야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여하는 번호를 말함.

- ▶ 정부는 영아 유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출생통보제 도입을 통해 아동의 출생사실과 출생신고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의료기관을 통해 출생한 아동에 대해 지자체(시·군·구)장은 출생신고를 확인하고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음.
- ▶ 출생통보제의 도입으로 일부 임신부가 의료기관 이용을 기피할 위험성과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위기 임신부를 고려하여 위기 임신부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한 '보호출산제' 도입 법안이 2023년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이 제도의 시행을 통해 친생부모의 직접 양육을 돕는 상담과 지원을 받는 절차를 거친 후 임신부가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위기 임신부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방침을 세움.
- ▶ 한편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는 과거 6·25 전쟁 직후에 영아 사망률이 높았고, 출생 신고를 늦게 하는 관행과 가장장적인 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일반 살인죄 및 유기죄보다 형량을 낮게 하였으나, 이 법령이 폐지됨으로써 영아유기죄에 대해서도 일반 유기죄와 존속 유기죄의 처벌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바뀌게 됨.

〈표 1〉 우리나라 영아 유기 예방 관련 법령의 폐지와 도입 (2023년 기준)

구분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 폐지	출생통보제 <sup>8)</sup>	보호출산제 <sup>9)</sup>
시행일자	2023.07.17	2024.07	2024.07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법상 일반 살인죄 및 유기죄보다 형을 감경하고 있는 영아 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sup>10)</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관의 장<sup>11)</sup>,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읍·면 장 간의 출생사실 통보 및 출생신고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양육에 대한 상담<sup>12)</sup>과 지원이 필요한 위기 임신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신부는 가명과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게 됨.</li> <li>• 출생아동은 기초자체장애에 의해 성본 창설을 하고 입양·가정위탁·시설보호 등 보호 조치를 받게 됨.</li> </ul>
변경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작할 만한 동기로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경우 일반 살인죄나 유기죄보다 감경</li> <li>•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li> <li>• 영아 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300만원 이하의 벌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출생신고는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나 출생사실 확인과 출생등록을 연결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음.</li> </ul>	-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아살해죄에 대해 일반 살인죄와 존속살해죄 처벌 규정 적용</li> <li>• 영아유기죄에 대해 일반 유기죄와 존속 유기죄의 처벌 규정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li> <li>• 제44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제44조의4(출생신고의 확인·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제44조의5(자료제공의 요청)의 신설로 시·읍·면의 장은 통보받은 아동이 출생신고 기간(출생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법으로 도입됨.</li> </ul>

8) 출생통보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난 2023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음.  
 9) 보호출산제 하에서 지역상담기관(장)은 위기 임신부에 대해 상담(보호출산 포함), 서비스연계를 시행하여 임부와 출생아를 보호하고 친생모가 보호출산을 신청하게 되면 보호출산 아동은 성인이 된 후,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출생증서(상담과정, 상담 내용,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등을 담고 있음)에 대한 공개 청구를 통해 출생증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10) 기존 형법에서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경우 일반 살인죄나 유기죄보다 감경해 처벌하였으며,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영아 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던 내용을 폐지하여 영아살해에 대해서는 일반 살인죄와 존속살해죄 규정이, 영아 유기죄에 대해서도 일반 유기죄와 존속 유기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됨. 출처: 법률신문 2023. 07.18, '사형 집행시호 폐지'·'영아살해·유기죄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인출일: 2023. 10. 25)  
 11)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체 없이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을 통보,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침.  
 12)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위기임산부 지원 및 아동 보호를 위하여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 지정 및 운영하게 됨.

구분	영아 살해죄, 영아 유기죄 폐지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아살해·유기의 범죄를 방지하고 저항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영아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기관 출생 아동의 기본적인 정보를 관리하여,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산 및 양육에 대한 보호체계 마련</li> <li>보호출산을 희망하는 경우, 태아 및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li> <li>생모, 생부, 자녀의 복리 증진</li> </ul>

자료: 김자연·박은정·최윤경·차선자·윤수경(2023), 「영아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개선 방안: 영아 유기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해당 보고서는 미발간 상태이며, 보고서를 기반으로 재구성한 내용임)

## II 영아 유기 관련 국외 사례 검토

국외의 영아 유기 예방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보호출산제’ 도입이 실제로 위기임산부와 영아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 중요함.

영아 유기와 관련하여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익명(혹은 비밀)출산제’와 ‘아기피난처’ 운영 방식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음.

- ▶ 영아 유기 및 살해를 방지하기 위한 각 국의 대응책은 매우 다양하며 영아 유기 대응책으로 ‘익명출산제(비밀출산제)’ 및 ‘아기피난처’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개별 국가 특성에 따라 운영주체나 방식이 다름.
- ▶ 영아 유기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이나 제도의 도입 이후, 영아 유기 예방과 보호에 따른 효과성 또한 국가별로 차이를 보임. 우리나라는 산모나 태아의 건강상의 치명적인 결함이 없는 이상 인공임신중절이 금지되어 있어, 이와 유사한 독일의 사례(비밀출산제-국가지원체계로 편입, 아기피난처-민간에서 운영)와 비교해 볼 수 있음. 독일의 경우, 비밀출산제의 도입이 익명으로 영아를 유기 혹은 살해하는 사건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 2〉 국외 익명출산제, 비밀(신뢰)출산제 및 아기피난처 운영 사례

구분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관련법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793년부터 의료기관을 통해 익명출산제도 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4년 인공임신중절을 보완하기 위해 임신갈등법<sup>13)</sup>을 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1년 베이비박스 및 비밀출산에 관한 법 제정</li> <li>1974년 영아살해를 특정 범죄로 규정하며 다른 살인사건과 분류하여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99년 처음으로 텍사스에서 안전피난처 법(Safe Haven laws: SHL) 제정<sup>14)</sup></li> </ul>
익명출산제/비밀출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국민 포함 관광객 등도 제도 이용 가능</li> <li>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주의 아동사회부조기관(ASE: Service d'Aide Sociale a l'Enfance, 이하 ASE)에서 비용 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교단체 등에 의해 운영되던 익명 출산을 국가 지원체계로 편입</li> <li>의료시설을 통한 안전한 출산을 도모</li> <li>친생모와 자녀 간 상충되는 법률의 균형 보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밀출산을 요청하는 산모에게 출산관련 서비스 제공</li> <li>지방행정기관(아동청소년복지청)은 비밀출산 이후 출생아는 빠른 시일 내에 양부모 인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모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나 제도를 규정하지 않음.</li> </ul>
아기피난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익명출산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아기피난처는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에서 운영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에서 조건부로 운영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어 주마다 유기아동 해당 연령,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인력 등에 대한 규정이 상이함.</li> </ul>
영아유기 예방정책의 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1~2016년까지 익명출산건수는 매년 500~700건 내외, 동 기간 영아유기 건수는 10명 내외 수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밀(신뢰)출산제의 도입이 영아를 유기·살해하는 사건을 감소시키는 효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밀출산제 도입 전(1991년~2001년)과 후(2002년~2009년)로 영아살해 비율은 평균 7.2명(100,000명당)에서 3.1명으로 감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HL의 효과성 입증은 체계적 정보 수집의 한계로 객관적 근거 부족</li> </ul>

주: 1) 프랑스의 익명출산제도는 프랑스 사회라는 지역적, 시대적 특수성의 산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자녀와 친생모의 혈연진실주의보다는 익명성을 원하는 친생모의 의사를 최대한 보장하는 자녀의 신상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친생모의 익명출산 간의 대립구도로 볼 수 있음(출처: 안문희 (2023). 아동 생명권 보호: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2023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 한국아동복지학회세션 자료집. p.6)  
 2) 독일의 비밀(신뢰)출산제도는 합법적인 제도 하에서 임신부가 자신의 신원이나 신상정보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가명으로 출산지원시설 등에서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으며 안전하게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말함(출처: 조은희 (2023), 「아동 생명권 보호: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2023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 한국아동복지학회세션 자료집. p.23).  
 자료: 김자연·박은정·최윤경·차선자·윤수경(2023), 「영아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개선 방안: 영아 유기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해당 보고서는 미발간 상태이며, 보고서를 기반으로 재구성한 내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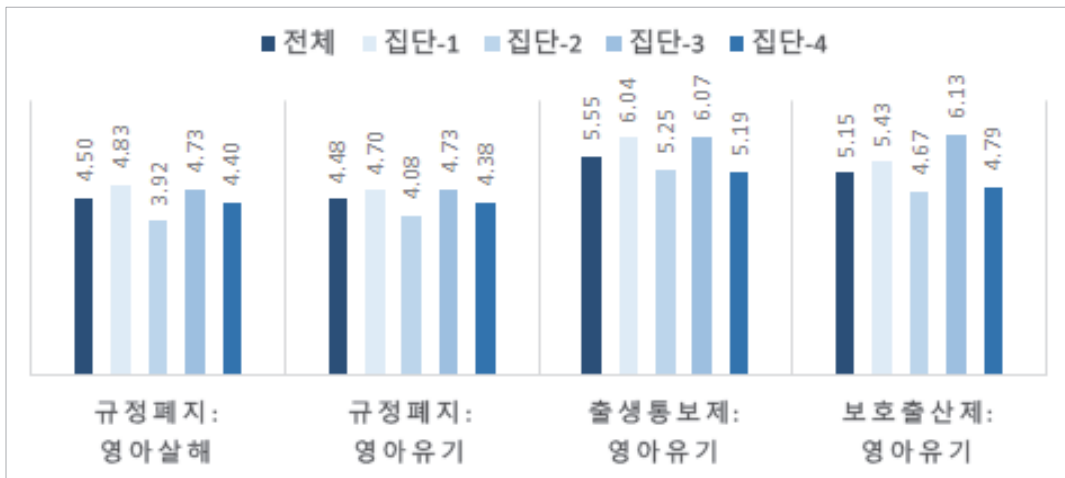
### III 영아 유기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의견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 폐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의 영아유기 예방 기여도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알 수 있음.

전문가 조사를 통해 영아 유기 예방효과는 출생통보제 > 보호출산제 > 규정폐지의 순으로 나타나 출생통보제가 영아 유기 예방에 가장 높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음.

- ▶ 출생통보제에 대한 기대는 대부분의 출산이 의료기관(병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아 유기 발생이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신생아시기에 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납득이 가능한 결과임. 그러나 전문가 집단의 특성에 따라 예방 기여도에 대한 편차가 있으며, 법학계열과 경찰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3의 경우 출생통보제보다 보호출산제 도입이 영아 유기 예방 기여 정도가 더 높을 것이라 응답하였음.
- ▶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2024년 7월에 동시에 시행될 예정으로 두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개별 제도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인력 확보, 보호와 지원에 대한 전달체계의 마련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함. 특히 위기·취약 가구에 대한 보호체계를 확대하고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음.

[그림 1] 전문가 집단에 따른 규정폐지와 신규 법안 도입의 영아살해와 영아 유기 예방 기여도(평균)



주: 1) 전문가(온라인)조사 응답자는 대학 및 연구기관, 의학계열, 법학계열, 소방, 경찰, 관련부처, 아동복지시설, 입양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영아학대 및 영아유기와 관련된 업무경험을 가진 (현장)전문가를 포함하고 있음.  
 2) 전문가 집단1-4는 다음 기준으로 분류됨. 집단1-대학 및 연구기관과 기타(민간기관 연구소), 집단2-의학 계열과 소방, 집단3-법학계열과 경찰, 집단4-관련부처, 아동복지시설, 입양기관 및 민간단체 등  
 3) 영아살해 및 영아유기 예방기여도는 7점 척도를 활용하여 매우 그렇다 7점~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책정하여 전체 및 전문가 집단 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함.  
 자료: 김자연·박은정·최윤경·차선자·윤수경(2023), 「영아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개선 방안: 영아 유기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해당 보고서는 미발간 상태이며, 보고서를 기반으로 재구성한 내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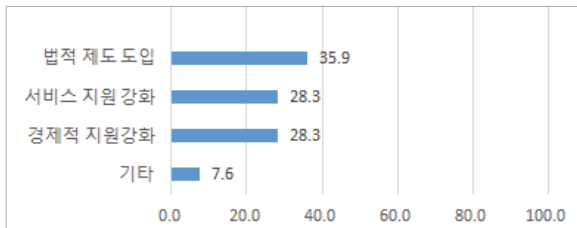
13) 임신갈등법 : 독일 원어, SchwHiAusbau  
 14) 아동복지정보 게이트웨이 홈페이지, <https://www.childwelfare.gov/pubpdfs/safehaven.pdf>(인출: 2023.10.18.)

영아 유기 예방을 위해 법적 제도 도입뿐만 아니라 위기·취약 가구의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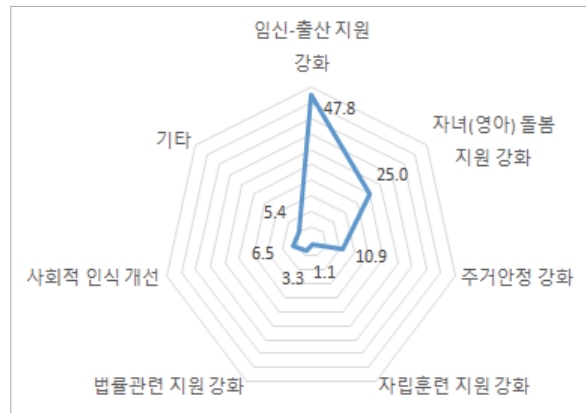
영아 유기 예방을 위해 법적 제도의 도입(35.9%)과 더불어 위기·취약 가구의 지원은 서비스 지원 강화(28.3%), 경제적 지원 강화(28.3%)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 ▶ 영아 유기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2024년에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도입으로 다소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됨. 보호출산제는 위기·취약 가구의 임신, 출산 그리고 아동의 양육 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 제도의 도입은 위기·취약 가구의 발골을 확대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음.
- ▶ 따라서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위기·취약 가구의 필요 영역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관련 정부부처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함. 특히 위기·취약 가구의 임신-출산 지원, 자녀(영아) 돌봄에 대한 지원, 주거안정에 대한 필요성이 크므로 ‘보호출산제’ 도입과 함께 이러한 요구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안이 마련되어야 함.
- ▶ 영아 유기 예방을 위한 위기·취약 가구대상의 우선적인 지원은 임신-출산 지원 강화(47.8%), 자녀(영아)돌봄 지원 강화(25.0%), 주거 안정 강화(10.9%), 사회적 인식 개선(6.5%)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임신-출산 시점에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후 초기 양육시기에도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과 주거안정을 통해 안정적인 양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함.

[그림 2] 영아유기 예방을 위해 도입이 필요한 정책<sup>15)</sup>, %



[그림 3] 영아유기 예방을 위한 위기·취약 가구 우선지원 정책 의견, %



주: 1) [그림 1]의 설명과 동일한 내용임.

자료: 김자연·박은정·최윤경·차선자·윤수경(2023), 「영아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개선 방안: 영아 유기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해당 보고서는 미발간 상태이며, 보고서를 기반으로 재구성한 내용임)

유기로 인해 장·단기 보호가 필요한 영아를 위해 가정형 보호체계를 활성화하여 가정위탁제도<sup>16)</sup>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영아 유기는 대체로 생후 1개월 미만 시점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아동의 특성(월령, 건강특성, 장애여부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아동보호체계에서 가정위탁이 가장 적합한 보호형태에 해당할 수 있음.

- ▶ 전문가 조사 결과, 보호가 필요한 영아의 경우, 보호기간 3개월을 기준으로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일 때 각각 52.2%, 54.3% 비중으로 가정위탁이 가장 적합한 보호형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조사됨. 3개월 미만의 단기보호의 경우

15) [그림 2] 상에 도입 필요 정책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조사됨. 법적 제도 도입: 생모(산모)의 친권포기가 결정된 후, 의료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출생아를 입양기관에 인계할 수 있는 법적 제도 도입, 서비스 지원 강화: 부모(혹은 부 또는 모)가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양육지원에 대한 서비스 지원 강화, 경제적 지원 강화: 부모(혹은 부 또는 모)가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양육지원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16) 아동보호체계에서 영아유기로 인한 요보호아동이 발생할 경우,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해당 아동을 입양,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하게 됨.

일시보호(소)의 비중이 30.4%로 나타나, 이는 3개월 이상 장기보호에서 입양(28.3%)으로 보호형태가 전환된 것으로 판단됨.

- ▶ 가정위탁의 한 형태로, '전문위탁가정<sup>17)</sup>'은 2세 이하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 중에도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담 시설이 있음. 그러나 여전히 영아를 보호·양육할 수 있는 전문위탁가정이 부족하여 일반위탁가정에서 영아를 보호하는 경우도 종종 있음.
- ▶ 영아 또는 장애아 전담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각각 4점 척도 평균 3.87과 3.86으로 확인되어 이들을 위한 전담 시설의 필요성은 큰 것으로 파악됨.
- ▶ 현재의 가정위탁은 대체로 보호기간이 1년 단위<sup>18)</sup>로 이루어지며 보호가 종료되는 시점에 대상 아동의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한지 여부는 다차원적인 평가를 통해 결정됨. 따라서 영아를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반위탁가정<sup>19)</sup>의 양육 역량을 강화시키고 영아 양육에 필요한 지원<sup>20)</sup>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와 더불어 장애 영아를 대상으로 한 전담시설의 필요성이 크므로 장애 영아를 보호할 수 있는 장애전문위탁가정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표 3】 유기영아 보호기간에 따른 보호형태와 영아 및 장애아 전담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구분	보호기간		구분	응답자 수 (%)	영아 및 장애아 전담시설의 필요성, 평균 (표준편차)	
	단기보호 (3개월 미만)	장기보호 (3개월 이상)			영아 전담 시설	장애아 전담 시설
전체	92 (100.0)	92 (100.0)	전체	92 (100.0)	3.87(1.11)	3.86(1.04)
일시보호(소)	30.4	5.4	전문가 집단-1	23 (25.0)	3.87(1.10)	4.35(0.71)
위탁가정	52.2	54.3	전문가 집단-2	12 (13.0)	4.08(0.79)	3.50(1.00)
공동생활가정	8.7	7.6	전문가 집단-3	15 (16.3)	3.93(0.88)	3.73(1.16)
아동양육시설	8.7	4.3	전문가 집단-4	42 (45.7)	3.79(1.28)	3.74(1.11)
입양	-	28.3				

주: 1) 그림 1의 설명과 동일한 내용임.  
 자료: 김지연·박은정·최윤경·차선자·윤수경(2023), 「영아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개선 방안: 영아 유기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해당 보고서는 미발간 상태이며, 보고서를 기반으로 재구성한 내용임).

## IV 영아 유기 예방 및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제안 및 함의

영아 유기 예방을 위한 법률과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균형적인 접근

2024년,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될 예정으로 이 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실제적인 영아 유기 예방과 위기·취약가구 보호를 위해서는 다음 사안을 해결해야 함.

- ▶ 위기·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임신·출산에 따른 서비스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출산 이후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자녀(영아)돌봄에 대한 지원과 주거안정이 이루어져야 함.
- ▶ 미혼모(한부모)에 따르는 부정적인 시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정책지원을 다양한 방면에서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음.

17) 전문위탁가정은 학대피해, 2세 이하, 장애, 경계선 지능 아동을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양육하는 형태임.  
 18) 위탁가정 면담을 통해 가정위탁은 위탁가정과 보호대상 아동 및 그 가족의 상황에 따라 보호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나 영아를 보호하는 전문위탁가정이나 장기위탁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재설정하고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기술하였음.  
 19) 가정위탁 보호유형의 한 형태로 보호대상아동을 일반가정에서 보호양육하는 것을 말함.  
 20) 일반위탁가정에서 2세 이하 영아를 보호할 경우, 전문아동보호비(아동 1인당 월 100만원 이상 지급)에 준하는 비용지원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 구체적으로 고용유지 및 일자리 복귀 지원, 의료기관과 지원체계 연계의 강화, 산후조리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과 공공산후조리원 연계, 초기양육 지원을 목적으로 한 건강관리 사업 연계(예-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연계, 바우처 지원 사업 확대 등과 연계하여 경제적인 자립과 안정적인 양육환경 마련이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음.

### 영아 유기 발생에 대응하는 보호체계 개선과 제도적 기반의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

아동 중심의 정책지원을 통해 효과성을 제고하고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보호체계의 마련이 요구되며 통합적 자료 구축을 통해 중앙과 지자체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 유기로 인한 요보호아동을 조기발굴하고 보호조치를 통해 유기아동이 건강하게 성장·발달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 ▶ 아동의 발달과 애착 형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보호가 필요한 영아의 경우 특히 위탁부모를 통한 가정형 보호가 적합하므로 위탁가정의 발굴 및 교육, 일반위탁가정 지원을 확대하여 이들의 양육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위탁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야함. 또한 요보호 아동 중에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어,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전문위탁가정 발굴 및 양성과 함께 일반위탁가정에서도 기존의 ‘장애아 돌보미’<sup>21)</sup>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 요보호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구축 및 보호형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체계 및 지원수준을 가늠하며 향후 필요한 지원을 능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구축함. 이를 기존의 아동통합정보시스템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김자연 부연구위원 kimjayeun@kicce.re.kr

2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상에 제24조의2(장애아 돌보미의 자격)이 2023년 3월 28일에 신설되었다. 이 조항의 내용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장애아 돌보미”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실제 아동의 친인척이 해당 교육을 받고 돌보미를 수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원가정이 없는 경우에는 장애아 돌보미를 통한 서비스 제공을 받는 것이 어려우며 해당 제도 신설이 최근에 이루어져 이러한 제도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은 편이다.

# 육아정책 Brief

통권 제98호